

■ 최신 판례 ■

이직 전 회사일로 기소당한 직원에게 내린 장기간 무급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사례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구합71601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

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휴직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.

A 회사는 의약품 수출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, B 씨는 2015년 1월 12일에 A 회사의 부서장으로 입사하였습니다. 이후 B 씨가 이직 전 근무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, B 씨는 당시 부서장이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에 기소되었습니다. A 회사는 2017년 11월 1일에 B 씨에게 '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'는 이유를 들어 무급휴직을 명하였습니다.

법원은 먼저 '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,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,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'고 판시하였습니다.

이어 B 씨가 기소된 것은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고, A 회사는 B 씨의 기소 사실을 안 직후 B 씨가 A 회사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문제될 만한 일을 하였는지 여부를 내부 조사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습니다. 또한 B 씨가 기소되었다는 사실이 고객들에게 별다른 영

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, B 씨가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서장으로서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